

●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-149호

「국가기술자격법」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01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행정처분 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
1. 대상

성명	소재지	위반사실	처분내용
이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50번길, (이하생략)	국가기술자격증 대여	자격취소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성명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법 령
이*	국가기술자격증(굴삭기운전기능사) 대여 부자조경(주)('22.06.01.~'23.01.31.)	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[별표18]

3. 의견제출

- 제출기간 : 2024. 7. 16.(화)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
(☎ 02-2110-6728 / FAX 02-2110-0682 / E-mail : sh2079@korea.kr)
- 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(의견제출서)

4. 기타사항

-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(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)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